



금 융 감 독 원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수신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06704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4길 4, 2층(반배동,
프린스 호텔빌딩))

(경유)
시보수신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1. 2016.4.21.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귀 단체(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단체에서는 2016.4.1. 개정된 자동차보험료준약관과 관련하여 다음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① 통상의 수리기간 초과부분에 대한 대처료 인정여부에 대하여 “보험사
가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불고지연 등의 사유없이 정당한 사유로 렌트기간이 연장될
경우 대처료가 지급되는지

또한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불고지연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 (회신) 2016.4.1.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동차보험료준약관상 대처료 지급기준은 렌트
기간의 기산점을 피해 차량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된 시점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렌트차량 제공기간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최대 30일 이내에서 수
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바 대로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불고지연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
을 초과하는 대처료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이를 입증주정하여야 합니다.

*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
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② 개정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시행일 전인 '16.3.31.이전에 체결된 자동차 보험은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적용받는지 여부

→ (회신) 대차로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이 시행일은 2016.4.1. 이므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 전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보험 계약 종료일까지 개정 전 개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개정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동급의 차량과 동일규모의 렌트차량을 제공 하는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서 시도지사가 공보에 차량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차량을 연장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렌트차량의 기간은 ?

→ (회신) 개정 전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을 대여 받을 수 있는 렌트카업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부 피해자는 자동차동호회 등으로부터 차량을 대차한 후 보험회사에 대차료를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 보험금 누수의 한 요인이 되었고,

피해차량과 연식과 배기량이 동일한 차량이 렌트카시장에 없는 데도 피해차량보다 고 가치량을 렌트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시 대차하는 렌트차량 제공기준을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렌트차량 중 최저요금의 렌트차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당시 피해차량의 연식이 출고일로부터 4년인 중형차인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트카시장에서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렌트차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맞는 렌트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고당시 피해차량의 연식이 출고일로부터 7년인 중형차인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트카시장에서 배기량, 연식이 7년인 중형차량을 구할 수 없으므로*

* 대부분의 렌트차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량이 5년(경형~중형) 또는 8년(대형) 이하의 차종을 보유

이 때에는 피해차량 소비자의 운행이라는 사용기치를 고려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동일 규모의 차량, 위의 예에서는 배기량 1600cc이상 2000cc 미만의 중형차량 중에서 최저요금의 대여차량을 대차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책서가 렌트차량이란 가장 저렴한 특정 렌트기업체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각 렌트기업체의 등급 렌트차량 중 대차료가 가장 저렴한 차량그룹'을 의미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책서가 렌트차량의 렌트요금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체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인 '통상의 요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에서 피해차량이 중형차량으로 연식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5년 초과로 렌트회사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의 차량이 10년이 지났건, 20년이 지났건 자동차사고시 대처할 수 있는 동일규모의 차량은 렌트회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차량 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동일규모'의 차량 중 최저차량을 의미하므로,

피해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중고시세가 매우 낮더라도 가장 저렴한 경차 중 하나의 차량을 사고대차시 렌트차로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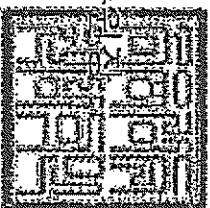
④ 개정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자동차 사고시부터 원차 인도시까지 단계별로 사고대차로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피해자에 대한 고지의무 주체는 ?

→ (회신) 자동차사고로 인한 대차료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고상황에서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차료 지급기준을 안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자동차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상직원 등이 도착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렌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분에게 가해자분이 가입한 보험회사명 및 보험가입일자 등을 확인한 후 렌트차량을 대차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금융감독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04/28

전결 04/28

조시영

박성재

팀장(사)

김일태

함의자

시행 보험특수-151

(2016.04.28.)

접수

()

우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http://www.fss.or.kr>

전화번호 02-3145-7468

팩스번호 02-3145-7489

/ goroket17@fss.or.kr

/ 비공개(5)

"창의적 금융, 비조직원서로 도와드립니다."